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70

발의연월일 : 2024. 11. 21.

발 의 자: 박해철 • 박지원 • 박홍배

김 윤 · 정동영 · 강준현

김 현 • 박희승 • 송옥주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는 영세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여, 파견근로 자의 처우개선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항 삭제).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 ③ (생 략)	시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
	<u></u> 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u><</u> 삭 제>
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